

| | |
|-------|----------|
| 의안 번호 | 제 78 호 |
| 의결연월일 | 2003.9.3 |

예산군경영수익사업투자기금조성및운용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 결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03. 8. 22. 예산군수

나. 회부일자 : 2003. 8. 22.

다. 상정일자 : 2003. 8. 28.

제108회 예산군의회(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

2. 제안설명요지(경영관리실장 : 최화진)

가. 제안이유

- 경영수익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장·단기적 사업계획에 따른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여 경영수익사업 수요발생시 사업비 조달의 부담을 경감시키고, 투자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33조 및 지방재정법 제1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의 조성 및 운용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나. 주요골자

- 경영수익사업 추진을 위하여 예산군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의 10%이내, 경영수익사업의 수입금, 기금의 운용 수입금, 기타 경영관리 등 수입금으로 투자기금을 조성하여 다양한 투자재원 확보가 가능토록 함. (안 제3조)

- 경영수익사업 투자기금계좌를 설치하여 은행에 예치 또는 국·공채 및 기타 유가증권 매입 등 기금증식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함. (안 제4조)
- 경영기획심사단을 구성하여 경영수익사업 발굴 및 선정, 기금운용과 결산에 관하여 심의하도록 함. (안 제5조)
- 부존자원 활용, 토지이용개발,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 등 기금에서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의 범위를 명확히 함. (안 제6조)
- 기금운용계획을 매 회계년도마다 수립하여 기금의 효율적 운용관리를 도모함. (안 제7조)
- 기금운용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기금운용관(경영관리실장)과 기금 출납원(경영개발담당)을 둠. (안 제8조)
- 기금운용관은 매 회계년도마다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군수와 경영기획심사단에 보고하고 군수는 매 회계년도 결산보고서를 군의회에 제출함으로써 기금운용의 투명성을 제고하도록 함. (안 제10조)

3. 검토보고요지(전문위원 : 장순근)

- 본 제정조례안은 경영수익사업 추진에 따른 투자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여 사업비 조달부담을 경감시키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서
- 제2조 (경영수익사업)은 예산군 경영기획심사단에서 선정한 사업으로 지역경제 및 개발의 유발효과가 큰 사업을 하게 되어 있는데, 제5조 제2항의 경영기획심사단의 기능은 군정조정위원회에서 대행하도록 하였는바,
- 제6조 (대상사업 및 선정)에 있어 다양하고 폭넓은 분야별 전문성이 요구되는 사업을 실·과장으로 구성된 군정조정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오는데 사업의 성격상 중요한 사업을 전문분야에 있어서는 심도 있는 심사가 미흡할 것으로 생각되는 바, 별도의 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필요성은 없는지 설명이 요구되며,

- 제3조 (기금의 조성)에 있어 순세계 잉여금의 10% 이내와 신청사 건립기금 설치운용 조례의 순세계 잉여금 30% 이내와의 비율차 등으로 인한 문제점은 없는지와 재원조성을 높일 수 있도록 이자수입을 추가하는 방안도 필요하며,
- 제4조 (기금의 운용관리) 제2항에 있어 목표액과 기간이 불투명함에도 여유자금이 있을 경우에 유가증권 매입 등을 운용할 수 있도록 하였는데 기금조성하는데도 장기간 소요될 것으로 보는데 여유자금의 예상 및 목표액과 기간은 어떻게 되며, 이로 인한 기금조성에는 문제가 없는 것인지 설명이 필요함.
- 제10조 (결산 및 보고)에 있어 매 회계년도마다 결산보고서를 군의회에 제출하기 전 의회에서 살펴볼 수 있는 행정절차가 앞으로 연구검토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사료되며,
- 끝으로 기금조성에 있어 늦은 감은 있으나 특색 있는 사업을 발굴하여 추진함으로서 지방재정의 어려운 여건에 기금조성으로 투자재원 확보에 효과를 가져올 수 있을 것으로 보아 본 제정조례안은 타당성이 있다고 사료됨.

4. 질의·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없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